

이 기사를 게재할 공간적 제약이 다른 매체에 비해 덜하다는 점에서 장문의 보도문이 게재될 여지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문이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에 게재된 반론(정정)보도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사 삭제 요청이다. 기존 매체에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삭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30건 가운데 10건이 삭제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 1건은 다른 요구사항 없이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또 4건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는 동시에 이 기사가 게재된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사를 삭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정보 전파력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 운영 기술상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권리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러한 견해 이외에도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에는 이미 기존 매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반론권 청구 자격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정도 문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반론권 적용에 있어서의 기술 및 효과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중재부를 두는 것을 포함해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권 쟁점은 기존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점차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론권 청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5. 요약 및 결론

기존의 언론관련 법제는 언론사 중심의 정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래서 언론사가 생산하고 유통한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언론사의 특징인 보도의 광범위성, 신속성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즉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주요 정보 생산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으나, 현재는 개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처럼 단지 정보를 매개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 매체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 중에서 가장 핵

---

20) 언론중재위원회(2008).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57쪽.

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언론여부) 논의, 묵은 기사 또는 과거 기사의 삭제 청구권 논의,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의 반론권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은 쟁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재·개정과 판례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인터넷법을 만들어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법을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도록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는 현재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비록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법원은 점차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저널리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편집, 취재, 배포의 요인을 통해 고려컨대 언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문법과 언론법의 통제를 받으며, 아울러 반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오래된 정보(특히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이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나 운영자의 자발적인 조치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래된 정보나 묵은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가 영속화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론권의 행사도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반론권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실행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인터넷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를 중재위원회 내부에 별도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매체와는 다른 생산, 유통, 그리고 전파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론중재법을 적절히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그 개정은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인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영향력으로 인해 침해되기 쉬운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매개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털이 뉴스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위와 의도를 고려하여 책임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오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록 요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책은 비교적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인격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거나, 온라인상의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구제책을 체계적·통일적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인터넷 포털에게 지나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칫 인터넷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본권 (2005).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년·김재영(2005).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 가능성 탐색. 『한국방송학보』 19(3), 7-40.
- 김경제(2003). 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법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32권 4호, 92~112.
- 김경제(2004). 과잉금지의 원칙의 검토방법. 『사법행정』, 45권 3호, 24~37.
- 김상겸(2003).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헌법 합치여부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권 4호, 175~203.
- 김은미·이준웅(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4.
- 임종수 (2004). 미디어로서 포털. 『한국언론학회 2004 가을철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류승삼(1992). 실명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43호(여름), 28~37.
- 문재완(2003).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9권 2호, 333~369.
- 박선영(2000a). 인터넷 신문·방송과 반론보도. 『언론중재』, 74호.
- 박선영(2000b).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공법연구』 제28집 2호, 159~180.
- 박선영(2003).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9권 4호, 152~168.
- 박용규(2001). 한국 신문 범죄 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서울:현암사.
- 박용상(2003a). 범죄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1. 『언론중재』, 88호(가을), 68~86.
- 박용상(2003b). 범죄 보도와 익명 보도의 원칙 2. 『언론중재』, 89호(겨울),

- 36~53.
- 박익환·장용근(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세계법학연구』, 11권 2호, 114~128.
- 송경재 (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봄호, 178~210.
- 유승현·황상재 (2006). 포털미디어의 뉴스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디어 다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호, 197~232.
- 유일상(2007).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박영사.
- 이민영 (2007). 초점: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정책』, 19권 12호, 1~23.
- 이인석 (2002).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스티스』, 67호, 175~201.
- 이희완 (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신문과 방송』, 2월호, 128~132.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구본권(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2~212.
- 이재진·상윤모(2008). 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방송연구』, 13권 1호, 265~296.
- 임종수 (2006). 온라인 뉴스 양식과 저널리즘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2호, 37~73.
- 조규철 (2007). 『포털 뉴스의 의제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와 다음의 메인 뉴스 박스 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재·김위근 (2006).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437~464.
- 황성기(2007a).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2007-1. 197~232.
- 황성기(2007b).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호, 149~190.
- 황용경(2005).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 97호(겨울), 108~115.
- 황용석 (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2권 1호, 128~169.
- 황용석·강원(2001). 『언론사 닷컴: 현황과 과제』. 서울:한국언론재단.

- Gandy, O. H.(1994). "The information of superhighway as the yellow brick road." *The National Forum*, 74(2), 24~28.
- Hoyt, C. (2007). When bad news follows you. *New York Times* Public Editor Column, 2007.8.26.  
(<http://www.nytimes.com/2007/08/26/opinion/26pubed.html>)
- Lee, J. (2008). "The right of reply," 4411~4415, in Wolfgang Donsbach(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ol. X*. Malden, MA: Blackwell.
- Magee, R. G. & Lee, T. H. (2007). Information conduits or content developers? Determining whether news portals should enjoy blanket immunity from defamation suits.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12(4), 369~404.
- Silha Center (2003). Comments of the Silha Center for the study of media ethics and law, 1~11. University of Minnesota.